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585-2호 (심의일: 2024.02.27) [유효기간: 2024.02.27 ~ 2025.12.31]

##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GIC) 상품설명서 (고객교부용)

※ 본 설명서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판매사가 고객에게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품제공기관이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상품별 개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아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상품정보

상품유형	이율보증형보험(GIC)
상품명(상품제공기관)	KB손해보험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KB손해보험)
상품 주요 내용	상품제공기관이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상품별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적용이자율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만기재예치	· 확정급여형(DB) :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자동재예치 ·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자동 재예치 불가(2023.7.12 만기건부터 적용)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펀드 상품과 함께 구성된 원리금보장상품은 자동재예치
중도해지이율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 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중도해지이율 적용 이율 및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상품별 약관 참조)
상품 특징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연금 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이율보 증형보험 상품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월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 이율을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확정 적용하는 상품

### □ 금융소비자권리보호안내

예금자보호여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이 퇴직연금은 <u>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u> ·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u>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u>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금융소비자가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한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청약 철회 의사를 발송한 때에는 은행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sup>주1)</sup> 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b>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sup>주2)</sup>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b>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ul> <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 주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주2)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 □ 설명의무이행확인

가입하신 이율보증형보험에 대해 판매직원이 설명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KB국민은행 ( ) 지점 / 판매직원 ( ) (자필서명)

년 월 일

## KB손해보험

#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설명서

무배당 KB손보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신탁제공용)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의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품 설명

□ 상품 설명	
구분	내용
상품제공기관	■ KB손해보험
상품유형	■ 이율보증형보험
상품특징	■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월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이율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확정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이율보증기간(만기): 1년, 2년, 3년, 5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ul> <li>■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li> <li>■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지표금리는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지방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li> <li>■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KB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 <li>* 홈페이지: www.kbinsure.co.kr &gt; 공시실 &gt; 보험상품공시 &gt; 퇴직연금 &gt; 퇴직연금사업자공시 &gt; 원리금보장상품현황</li> </ul>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 이율보증형 1년: 경과기간 6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 경과기간 6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 - 이율보증형 2년: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 경과기간 12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5% - 이율보증형 3년: 경과기간 18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 경과기간 18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 - 이율보증형 5년: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적용이율 X 50%,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적용이율 X 60% 경과기간 36개월 미만 적용이율 X 70%, 경과기간 48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 경과기간 48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
특별 중도해지	<ul> <li>■ 다음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li> <li>-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li> <li>-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li> <li>-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li> <li>-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li> <li>-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li> <li>- 가입자가 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li> <li>-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변경하는 경우</li> <li>-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li> <li>- 전출입 등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li> </ul>
만기 후 운영방법	<ul> <li>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 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li> <li>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li> <li>단, 확정급여형의 경우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li> </ul>

고객콜센터 1544-9520 http://pension.kbinsure.co.kr

### □ 기타 안내사항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

구분	내용
예금자 보호여부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회사가 운영주체인 DB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이 상품에 대한 문의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www.kbinsure.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콜센터 1544-9520 http://pension.kbinsure.co.kr